

저소득 주민을 위한

#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

지원대상자가 **2억원 이하**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 
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**최대 30만원**까지 지원  
※ 계약일기준 2년 1회 지원, 타기관 및 지원사업 등 중복 수혜 불가



**지원대상*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기도 내 자립준비청년(39세 이하)

**접수처** 시·군청 부동산담당 부서

- 구비서류**
-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
  - ②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- ③ 매매(임대차)계약서 사본
  - ④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
  - 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
  - ⑥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
  - ⑦ 통장사본

※ 경기도홈페이지, 경기부동산포털 등에서 구비서류1,2번 다운로드 가능

**문의처** 경기도콜센터 ☎ 031-120